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정운천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23566
----------	-------

발의연월일 : 2019. 11. .

발의자 : 정운천 · 김성찬 · 이양수
경대수 · 황주홍 · 윤준호
손금주 · 오영훈 · 손혜원
김태흠 의원(1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법상 기본원리인 법치주의 실현을 위해서는 법률이 알기 쉽고 분명한 용어로 표현되어 있어서 일반 국민이라면 누구나 그 내용을 쉽게 이해하고 법을 잘 지킬 수 있어야 함. 그러나 현행 법률에서는 어려운 한자어나 일본식 표현을 사용하는 경우가 많아 국민의 일상 언어생활과 거리가 있다는 지적을 받고 있음.

이를 위해 어려운 한자어, 축약된 한자어, 부자연스러운 일본식 용어 등을 한글화하거나 보다 쉬운 표현으로 개정함으로써 법률에 대한 국민의 이해 정도와 접근가능성을 확장시키고 국회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높이는 데에 기여하고자 함.

이에 현행법에서 사용하고 있는 “없는 한”을 “없으면” 등으로 정비하려는 것임(안 제7조제1항 · 제26조제1항제2호, 법률 제16196호 제10조의6제2호).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1항 후단 중 “없는 한”을 “없으면”으로 한다.

법률 제16196호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제10조의6제2호 중 “경과되지”를 “지나지”로 한다.

26조제1항제2호 단서 중 “해소한”을 “없앤”으로 한다.

부 칙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법률 제16196호 제10조의6제2호의 개정규정은 2020년 1월 9일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터 3개월 이내에 그 사유를
해소한 경우는 제외한다.

3. ~ 8. (생 략)

② · ③ (생 략)

없앤-----.

3. ~ 8. (현행과 같음)

② · ③ (현행과 같음)